

# 성경에 나타난 ‘죄와 벌’ 개념에 대한 형법학적 이해

이인영(백석대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죄와 벌’에 대한 성경적 관점

1. 성경에서의 죄
2. 성경에서의 범죄관
3. 성경적 범죄관의 특징
4. 성경에서의 형벌관
5. 성경적 벌(罰)의 특징

## III. ‘죄와 벌’에 대한 형법학적 이해

1. 형법학에서의 범죄관
2. 성경적 범죄관과의 비교
3. 형벌사상과 형법적 형벌관
4. 형벌의 현재와 미래 - 교육형과 교정(矯正)

## IV. 나오는 말

---

• **ABSTRACT** •

---

In this paper, I researched christian viewpoint on "Crime and Punishment" and compared it with legal viewpoint in criminal jurisprudence, for the purpose of sublating the dichotomy of the holy God's law and secular earthly law.

According to this research, christian viewpoint on "Crime" has peculiarities as followings.

First, mental or inner world's malice, greed, and licentiousness are all considered as sin according to the Bible. In criminal law, however, crime is only punishable when it is expressed.

Second, the Bible places a great deal of weight on idolatry. To worship idols is the betrayal of God as well as the viol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Commandment. The criminal codes do not contain such type of rule.

Third, the Bible says the original sin is inherited from Adam to mankind. The criminal laws, based on one's own responsibility principle, do not punish one due to others crime.

Forth, unlike the criminal law, the Bible provides moral rule as if the fifth commandment.

A common point of sins on bible and crimes on law is the violation of rules. The former means the violation of God's rules, and the latter, the violation of human rul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s depended on whether the law regulate inner side or not.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not totally different one, but reciprocal complement.

**Keywords:** crime, punishment, retribution, prevention, correction

---

##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왜 죄를 짓는 것인가? 벌(罰)을 통해 그 죄(罪)가 용서될 수 있는가? 죄와 벌의 본질은 무엇이며 형벌의 기능은 어떠한가 할 것인가 등의 '죄와 벌'에 관한 숭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사회 있는 곳에 법(法)이 있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람이 법 없이는 살 수 없다. 법은 공동체 생활의 원리이자 삶의 기준인 사회규범의 일종으로서 강제 규범이다. 이 중 형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공법(公法)으로서 한마디로 말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술하면서 '죄와 벌'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 세상의 우리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 그 관계를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공의(公義)가 뿌리내려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성서적 관점에서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살펴보기로 하였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의 법은 거룩하고 세상의 것은 세속적이라는 이분적인 사고에 젖어들어 구분 짓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당시에는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다. 다만 사람들에게 의해 더럽혀졌을 따름이다. 이제 양자의 조화 내지 연계를 도모하려면 세상이 원래 아름다웠다는 인식을 갖고 그 아름다움을 현실 가운데 복원하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출발선상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에서의 범죄와 형벌을 바라본다면 '죄 없는 인간사회'를 향한 우리의 목표에 한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 II. ‘죄와 벌’에 대한 성경적 관점

### 1. 성경에서의 죄

일반적으로 죄(罪) 또는 범죄(犯罪)란 도덕윤리·법 등의 사회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컫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sup>1)</sup> 성경에서는 이를 죄, 죄악(사22:14), 범죄, 불법(딤후2:14)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창2:17)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탄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3:4)”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야 말았다.

소요리문답(The Shorter Catechism) 제14문에 의하면, “죄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어기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고, 제18문의 “사람이 타락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유죄한 것과, 근본 의(義)가 없는 것과, 온 품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라고 답한다.<sup>2)</sup>

대요리문답 제24문은 “죄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답하기를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제2문의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성(罪性)은 어떻게 구성습니까?”라는 질문

1) 하용조 편, 『비전성경사전』, 두란노, 2001, 1151면,

2) Williamson, 최덕성 역, 『소요리문답강해』,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58면, 68면.

에는 “사람의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와, 창조 시에 받은 의(義)의 상실과, 그의 부패로 모든 영적 선(善)을 전적으로 잃어하며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惡)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며 습성화되어버린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 하고 거기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다 나오게 됩니다”라고 답하고 있다.<sup>3)</sup>

대·소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원죄(Original Sin)의 속성은 아담의 첫 범죄, 근본 의(義)의 상실, 모든 품성의 부패로 요약된다.

찰스 핫지(C. Hodge)는 아담의 첫 범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사람의 성질을 부패시킨 죄의 성질이고, 인류의 시조로부터 유래되었고, 다른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되며, 성질상 자범죄(自犯罪)<sup>4)</sup>들과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5)</sup>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하나님과 불화한 타락한 인간의 본질에서 빚어지는 본질의 죄 ②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묘사하는 상태의 죄 ③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행위의 죄가 그것이다.

본질과 상태에 있어서의 죄란, 죄라는 것이 단지 외부로 나타나는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타락한 상태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sup>6)</sup> 아담이 원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 왜곡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에 미달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롬 5:10)이었고 육신의 정욕을 좇아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2:3)에 해당한다. 또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행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sup>7)</sup>

3) Williamson, 최덕성 역, 앞의 책, 341면.

4) 자범죄(Actual Sins)란 개인적으로 직접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영엽, 『신론 인죄론』, 생명의 말씀사, 2007, 452면.

5) 조영엽, 앞의 책.

6) 하용조 편, 앞의 책.

대요리문답 제22문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첫 범죄로 다 타락하였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아담과의 계약은 공적으로 맺어진 것이며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일반적 출생으로 난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이 첫 범죄로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루터교 신학자인 알트하우스(Althaus)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믿는다고 하나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Unglaube)이야말로 ‘본래의 원죄’(eigentliche Ur-Sünde)에 해당한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까지 표현하였다.<sup>8)</sup>

## 2. 성경에서의 범죄관

### 1) 구약성경의 범죄관

#### (1) 십계명의 의의

구약에서의 십계명(Decalogue, Ten Commandments)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기본계명으로서 신앙과 도덕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표준적인 규준이 되어 왔다.<sup>9)</sup> 일반적으로 도덕률로 간주되어지는

7) 로마서 5장 12절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은 아담의 타락하고 불순종한 원죄를 모든 인류가 물려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원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을 따름이었다(롬 5:13).

8) Althaus, *Die christliche Wahrheit*, S. 356. [김성봉, <죄에 대한 인식의 변천에서 볼 수 있는 현대 기독교 윤리의 위기>, 『한국개혁신학』, 한국개혁신학회, 1998, 435면 참조].

십계명의 목적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행동의 지침으로서 새로운 율법들이 만들어졌다.<sup>10)</sup>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백성의 생활규범이며 계약법, 율법의 기본원칙 또는 신앙자세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시로서 오늘날까지 인류사회의 규범의 원천이 되고 있다.

## (2) 십계명을 어기는 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17절과 신명기 5장 6-21절<sup>11)</sup>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神)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20:3). ②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20:4-5). ③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 20:7). ④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20:8). 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 ⑥ 살인하지 말지니라(출20:13). ⑦ 간음하지 말지니라(출20:14). ⑧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 ⑨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출20:16). ⑩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20:17).

십계명의 문장은 이와 같이 ‘(하지) 말라’와 ‘하라’의 형식을 취하고

9)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후 모세의 면전에서 두 돌판에 쓰인 것(출20:22, 신4:13)으로서 ‘모든 말씀’(출20:1, 신5:22)이기도 하며 두 돌판을 증거판(출 31:18, 32:15, 34:29) 또는 언약의 돌판들(신 9:9)이라고도 한다.

10) Wasserzug, 박용삼 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도서출판 풍만, 1988), 89면.

11)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 관계성보다도 도덕적 경건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어서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신명기에서 많이 인용하기도 하였다[이종성, 『주기도문 · 십계명 · 사도신경』, 대한기독교서회, 1982, 43면].

있다. ‘말라’<sup>12)</sup>는 명령에 위반하여 범하는 죄(Sin of Commission)를, ‘하라’<sup>13)</sup>는 명령에 대하여 하지 않는 죄(Sin of Omission)를 표현하고 있다. 전자는 금지규범으로서 형법상 작위범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요구규범에 해당하며 위반시 (진정)부작위범으로 나타난다. 다만 형법과 달리 가언적 판단형식이 아니라 정언(定言) 내지 단언(斷言)법(Apodictic Law)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십계명은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 22:37)과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인간에 대한 사랑(마 22:39)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이 십계명은 모세의 의해서 주로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던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 그 정신적인 면이 더 강조됨으로써 중요시되고 확대 적용되었다.<sup>14)</sup> 따라서 십계명의 양대 부분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십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4계명에 대한 위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세상적 형법에는 이와 관련한 범죄가 없다. 제5-10계명에 대한 위반은 곧 사회생활상의 부도덕 또는 범죄로 나타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는 제5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소위 불효(不孝)가 되며 이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 형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생명·신체·자유·재산 등에 대한 제한인 공(公)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형법은 그 처벌대상을 확대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가급적 윤리적 색채를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만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는 패륜적인 성격 등을 이유로 보통살인죄(동조 제1항)보다 그 형만을 가중하고 있을 따름이다. 1995년 형법개정시 신설된 형법 제275조 제2항<sup>15)</sup>의 존속유기치사상죄는 직계존

12) 제1·2·3·6·7·8·9·10계명.

13) 제4·5계명.

14) 세계복음화평화교회 저, 『성서의 근본윤리』, (민성사, 1980), 186-187면.



속 등을 유기하여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부도덕한 행태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세대를 감안하여 이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불효와 관련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 위반은 현행 형법각칙에 있어 제24장 살인의 죄로 처벌된다. 본죄는 법익 중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형법은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하여 존속살해죄(동조 제2항)를 가중처벌하고 영아살해죄(제251조)의 형을 감경하고 있다. 자살 자체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자는 자살교사방조죄로 처벌된다. 사람의 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법익이지만 스스로 처분할 수도 없는 법익이므로 촉탁·승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등을 받고 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로 처벌된다.

제7계명의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 위반하면 형법각칙 제32장의 ‘강간의 죄’와 제22장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1조의 간통죄로 처벌된다. 전자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주요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강간의 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강간죄, 의제강간죄(13세미만유년부녀간음죄), 미성년자간음죄, 피구금부녀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있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형법의 탈윤리적 경향과 관련하여 존폐론의 논란이 많은 범죄이다.

제8계명의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형법상으로 재산범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형법에 있어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

15) 형법 제275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범죄로는 각칙 제38장의 ‘절도와 강도의 죄’를 들 수 있고 본장은 각각 절도죄(제329조)와 강도죄(제333조)를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물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제355조 제1항)도 8계명에 반하는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십계명 중 9계명은 거짓증거를 금지하고 말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계명이다. 제9계명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출 20:16)은 제3계명과 함께 입술과 혀로 인한 죄악을 다루고 있다.<sup>16)</sup> 제9계명의 죄악은 일반적으로 거짓언행(거짓말과 거짓행동), 위증,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중상모략, 위계, 비방, 문서·통화·유가증권의 위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sup>17)</sup>

제10계명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금지하는 계명이다.<sup>18)</sup> 출애굽기(20:17)의 소위 시내산 언약은 “집”을 모든 이웃의 소유를 대표하는 물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5:21)의 세겜 언약은 이웃의 아내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다.<sup>19)</sup> 이 계명과 관계되는 형법상 범죄는 전술한 재산범죄와 간통죄를 들 수 있고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sup>20)</sup>와도 관련된다.

16) Moodi, 권달천 역, 『무디의 십계명 해설』(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145면 참조.

17) 상세한 것은 이인영, <십계명 제9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유관순연구』 7호(2006.6), 338-339면을 참조 바람.

18) 신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눅12:15)고 말씀하신다.

19) 송제근 교수는 신명기가 여자와 아내의 위치에 강조를 둔 것은 약속의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2004), 323면.

20) 경계침범죄란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2) 신약성경의 범죄관

(1) 신약성서의 죄는 두개의 헬라어로 집약되고 있다.

즉 아디키아(adikia)와 하마르티아(hamartyia)인데 ① 아디키아(adikia)는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인간의 선택들을 의미한다. ② 하마르티아(hamartyia)는 히브리어의 하타(chatta'ch)와 거의 비슷한 단어로서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주로 서신서들에서 특유한 신학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의 행위보다도 인간의 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sup>21)</sup>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의하면, 형벌의 대상인 죄(罪)란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서에 의하면 악한 생각, 탐욕, 악의 등 사람의 내적인 상태 내지 의사(意思)도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다루고 있는데,<sup>22)</sup> 특히 신약에 의하면 사람의 죄악된 마음은 바로 죄악된 행위들의 원천이 되고 있다.<sup>23)</sup> 대표적인 예로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의하면, 간음은 실제로 여성을 범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고 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어 '거룩한 성전'(고전3:16-17)이므로 죄성(罪性)과 악한 생각만으로도 더럽혀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관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21) 하용조 편, 앞의 책.

22) 마가복음 7장 21-23절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예로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malice), 속임, 음탕, 흘기는 눈( envy), 훼방, 교만, 광패(folly)를 들고 있다.

23) 마태복음 15장 19-20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라고 말한다.

## (2) 소위 “내 속에 거하는 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롬7:17; 7:20)에 대하여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롬7:15)고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만일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속에 거하는 죄니라”(롬7:17)고 말하고 있다. 어느 목회자는 ‘내속에 거하는 죄’란 선행과 내적인 생활과의 상반된,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이고,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마는 그렇지 못함으로 번민하는 내적인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내속에 거하는 죄’의 활동으로서 회의(懷疑), 교만, 핑계, 분노, 증오, 시기 등 6가지를 들고 있다.<sup>24)</sup>

## 3. 성경적 범죄관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 본 성경적 관점에서의 범죄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내면세계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 탐욕, 악의 등 사람의 내적인 상태 내지 의사들도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형법학상 주관주의 범죄이론에 가까운데 한 가지 차이점은 철저한 주관주의 범죄이론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 내지 의사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로마법상의 원칙에 의거 그 악한 심성(악성, 반사회적 의사)이 외부로 징표된 경우에만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에서 주관주의 범죄이론을 범죄징표주의라고도 한다.

둘째, 성경상의 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이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 위반하는 것이다. 우상을 세우

24) 이명직, <내 속에 거하는 죄>, 『활천』(1994.10), 18면, 21-23면.

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sup>25)</sup>.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출20:4)고 하신다.

칼빈(Calvin)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증거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완악하고도 야만적인 어리석음이며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였다.<sup>26)</sup>

신약에서도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 내지 육체의 일’(고전6:9, 갈6:20)이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탐심’(골 3:5-6)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셋째, 죄를 개개인의 행위 탓으로만 보기 보다는 인류의 죄가 유전되고 있다고 보는 점이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7)</sup>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므로 범죄한 아담의 피가 마음으로 전해지고 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sup>28)</sup>

넷째, 도덕적 성격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형법의 보충성’과 대비된다. 도덕률로도 불리어지는 십계명중 특히 제5계명에 위반하는 경우

25) J. Calvi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상)』, 크리스찬다이제스트(2007.3), 117-118면(제1권 제11장) 참조.

26) J. Calvin, 원광연 역, 앞의 책, 118면.

27) 시편 51편 5절에서도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술 하고 있다.

28) 이명직, 같은 글, 20면 참조.

에 성서적 죄는 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상으로는 불효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4. 성경에서의 형벌관

##### 1) 성경적 형벌의 의의

성경에서의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公義)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직접적 보응(報應)이라고 정의된다.<sup>29)</sup> 여기에서 '공의의 보응'이란 곧 전술한 응보(應報)와 같은 맥락이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형벌관에서 응보의 원리가 강하고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보형적 성격은 출애굽기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21:23-25)에 잘 나타나고 있다.<sup>30)</sup>

성경에서도 형벌(출21:20, 살후1:8-9), 죄벌(창4:13), 징벌(사53:4), 또

29) 조영엽, 앞의 책.

30) 그밖에 응보적 형벌관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 ① 창20:3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나의 아내임이니라”
- ② 출21:12-14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 ③ 출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④ 출21:16 “사람을 후린 자(가)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10년 이하의 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 ⑤ 출21:17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⑥ 출22:22-24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 ⑦ 출32:34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 ⑧ 마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⑨ 롬2:6 “하나님께서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報應)하시되...”

는 벌(창4:15, 24)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심판(審判)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의 벌(罰)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계19:2 등).

심판이란 넓은 의미로는 공의(公義)의 하나님이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하여 상벌(賞罰)을 내리시는 것을 말하지만, 통상 좁은 의미로는 죄를 지은 악인에 대한 처벌만을 뜻한다(시1:5).<sup>31)</sup> 이러한 심판은 ‘죄에 대한 정죄(롬8:1)’ 또는 ‘영벌(永罰)’(마25:46)로 지칭되기도 한다.

신약에 의하면, 심판이란 ‘모든 민족을 앞에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각각 분별하여 양(선한 자)은 그 오른쪽에 염소(악한 자)는 왼편에 두는 것’(마25:32-33)을 말한다. 이 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마25:34,41). 즉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永罰)에 들어가게 된다(마25:46). 의인들이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살후1:5)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살후1:11)이기도 하다.

## 2) 심판의 주체 및 대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가 되신다(히 13:23, 요8:50).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심판은 창세기의 홍수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 땅의 각종 재앙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심판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 전체에 대해 집단적으로 행해졌다. 로마서 3장 19절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송제근 교수에 의하면 이처럼 한 사람

31) 요한복음 3:17에서 “하나님이 그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는 귀절도 심판이 협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종족과 국가 전체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이미 선포되어진 오경의 언약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죄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한다.<sup>32)</sup>

신약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즉 심판자로 오실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마3:12).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심판과 관련 말씀으로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옛 말에서 더 나아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시고 계신다(마5:22).

또한 이러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 행해지지만<sup>33)</sup> 세상적 형벌처럼 ‘산 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하여도 행해진다(딤후4:1, 벴전4:5).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다.

### 3) 형벌(심판)의 유형 및 방법

성경에서의 형벌이란 곧 ‘죄의 값’이고 “죄의 값은 사망”(롬6:23)이다. 여기에서의 사망이란 우선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담과 하와의 범죄함에 대하여 “네가 ...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사망은 영적인

32) 또한 송 교수는 오경의 언약서는 사실상 예언적 메시지의 핵심구조를 형성하고 이 메시지의 내용은 정죄-심판-소망이라는 세 가지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송제근, 앞의 책, 306면.

33)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참조.



죽음을 뜻한다(겔18:20). 영적 죽음을 영혼의 기능과 작용이 하나님의 뜻과 법에 일치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설명되기도 한다.<sup>34)</sup> 에베소서 2장 1절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말씀과 같은 장 5절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라는 말씀들을 상고하면 영적 죽음이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람의 질병과 고통을 범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이라고 보기도 한다.<sup>35)</sup> 모든 병고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직접적 결과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sup>36)</sup>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 사람의 몸과 마음이 본래의 완전 상태에서 현재처럼 약화되고 불완전한 상태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계21:4) 형벌의 일종인 고통도 사망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주어진 벌(罰)로는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창3:23-24)<sup>37)</sup>, 해산의 고통(창1:28,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됨(창3:16),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됨(창3:17, 19) 등이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대표적인 심판은 창세기의 홍수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 땅의 각종 재앙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심판은 주로 종족과 국가에 대해 집단적으로 행해졌다.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의 유형으로 ①공회에 잡히는 것,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마5:22), ②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34) 조영엽, 앞의 책, 400면.

35) 조영엽, 앞의 책, 402면.

36)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라는 물음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9:2-3).

37) 조영엽, 앞의 책, 402면은 이를 거주지의 변화라고 한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마25:41-46)을 말하고 있고, 구약의 에스겔 14장 21절에서 말하는 중한 벌(罰)의 네 가지 유형으로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瘟疫)이 있다.

칼빈(Calvin)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모든 불경스러운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의와 악행을 통해서도 심판을 행하신다고 한다.<sup>38)</sup>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탄과 불경스러운 자들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시115:3) 분이시므로 직접 불경한 자들을 부르기도 하시고(사7:18; 5:26)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앓수르 사람들을 ‘나의 진노의 막대기’(사10:5)라고도 하신 점에서 불경한 자들도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다.

심판의 시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심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현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다.<sup>39)</sup>

심판이 구원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 성경적 형벌관의 특징이 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요3:18).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요3:17)이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요3:16)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죄(定罪)는 불신자들에게 행해지고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8:1).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 함은 곧 ‘죄사함’(눅 24:47)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심판의 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38) Calvin, 원광연 역, 앞의 책, 281면.

39) 그 밖에 관련 성경구절은 롬1:18, 계18:8 참조.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代贖)의 은혜에 기초한다(딤후2:14).<sup>40)</sup>

성경에서도 형벌과 징계(렘10:24)는 구별되고 있다. 형벌이 범죄로 인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인 반면, 징계는 사랑에 근거하여 바르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41)</sup> 다만 이사야 53장 5절의 '징계'(punishment)는 징벌의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 5. 성경적 벌(罰)의 특징

첫째,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로마서(5:12)는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죄가 유전됨에 따라 형벌도 후손에 물려진다는 점이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는...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고, 출애굽기 34장 7절<sup>42)</sup>에도 같은 취지의 말이 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도 있다. 후자의 말씀은 전술한 형법상 개인책임주의의 입장과 상응한다고 하겠다.

40)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요6:39)이다.

41) 조영엽, 앞의 책, 399면 참조.

42) 출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셋째,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욕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질병과 고통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넷째, 형벌 대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약에서는 각종 제사들<sup>43)</sup>이 행해졌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의한 대속(代贖)의 은혜가 적용된다.

‘죄 사함’이 현행 법제상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에 의해 처벌의 포기 또는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제도와 유사하지만, 성서에서는 대상자의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즉,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형법에서의 형벌은 개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기(개인)책임의 원칙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가 하나님의 징벌(懲罰)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찢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다(사53:6).

### III. ‘죄와 벌’에 대한 형법학적 이해

#### 1. 형법학에서의 범죄관

##### 1)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관

형법학의 원조 또는 선구자로 불리어지는 베카리아(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1764)에서 말하기를, 범죄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43) 레위기 4-7장에 기록된 바 제사의 종류로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위임제 등이 있다.

라고 전제하면서 어떤 범죄는 사회 혹은 그 대표자를 직접 파괴하기도 하고 어떤 범죄는 각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의 안전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범하는 살인과 강도 등의 죄가 가장 중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sup>44)</sup>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보통사람들이 아닌 귀족과 관리들에 의해 저질러질 때 훨씬 크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범죄는 정의와 의무 대신 강자로서의 특권을 확인시키게 되어 정의와 의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파괴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가 적을수록 사회에 이익이 되고 사회에 초래하는 해악이 큰 범죄일수록 적게 발생하는 것이 공익에 합치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형벌이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압제적인 심성이 사회의 법을 원초적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법자에 대하여 마련된 '구체적 계기'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형벌에 의한 구체적 계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반복하여 연상시키는 것만이 공공선(公共善)에 반하는 개개인의 강렬한 욕망을 억제하여 반대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고 한다.<sup>45)</sup>

베카리아의 범죄관 및 형벌관의 특징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직전 절대왕정시대의 소위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 체제하에서 당시 형벌의 잔혹성을 지적하고 범죄와 형벌의 성문화 및 균형을 강조하면서 고문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계몽적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근대적 형사법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 2) 형법학의 범죄이론과 범죄개념

형법학에서는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가

44) Beccaria,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 35-38면.

45) 같은 책, 11-15면.

있다. 즉 주관주의 범죄이론과 객관주의 범죄이론이 그것이다.

주관주의 범죄이론에 의하면 범죄인은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범죄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형벌은 범죄라는 객관적 사실보다 행위자의 반사회적 의사 내지 성격을 대상으로 하여 과하여야 하며, 형벌의 경중도 범죄인의 악성 내지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즉 행위자를 중심으로 그 성격, 소질 등의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여 이를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 중심사상으로서 범죄란 범죄인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의 징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주관주의 범죄이론과 달리 객관주의 범죄이론은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범죄의 외부적·객관적 측면인 행위와 그 결과에 둬으로써 형사책임의 근거를 범죄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구하려는 이론이다. 이 입장을 범죄주의, 행위주의, 사실주의, 현실주의라고도 한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객관주의 범죄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여 자유의사에 기한 행위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되며(의사자유론), 따라서 형벌의 종류 및 범위도 범죄사실의 양에 상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죄형균형론).

이 이론은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인권보장 이념과 결부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제도적 취지는 근대시민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한 통치, 법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대 형법학이 표방하는 지도원리로서 중세 교회의 죄악상과 절대왕정의 폭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형법상 범죄이론은 이와 같이 객관주의 범죄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주관주의 범죄이론을 가미하여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객관주의 범죄이론을 표방하는 고전학파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여 죄의 속성이 자유의지에 반한 선택적 결단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내면의 의사 내지 악한 생각을 죄의 범주에 포함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보면 성경적 범죄관은 형법학에 있어서 사람의 주관적 의사 내지 악한 성격(악성)을 범죄의 본질로 보고 있는 주관주의 범죄이론에 가깝다.

그리고 형법학상 범죄의 개념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형식적 범죄개념의 입장에서 범죄를 정의하고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sup>46)</sup> 형식적 범죄개념이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부합하고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인권보장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범죄의 법률적 의의(意義)인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법률상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즉 범죄의 성립요건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범죄개념을 살핀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구성요건해당성), ②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며(위법성), ③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책임)이 필요하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3가지 범죄성립요건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우선 범죄가 행위라는 점을 착안해야 한다. 행위란 사람의 내심의 (주관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신체적 동작 또는 태도에 의해 외부에 표현된 것을 말하며 통상 작위, 부작위, 고의행위, 과실행위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어떤 형사법규를 위반할 의사, 즉 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행위로 표출되지 아니하면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 법치국가의 법 영역에서는 사람을 그 내면의 생각 내지 의사만으로

46) 형식적 범죄개념에 대비되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의 실질적인 의미 내용을 중시하여 실정 형사법규의 존재 여부를 떠나 일상생활에서 법으로써 보호되는 생활상의 이익인 법익을 침해 내지 위협하는 사회적으로 해(害)되는 모든 행위를 범죄라고 파악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이 시대상황에 맞게 형사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로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형법상 책임주의

형법학에 있어서 책임(責任)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도의적 비난 내지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책임은 범죄성립의 제3의 성립요건이면서 형벌의 양과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형법은 “책임 없으면 (범죄 없고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책임주의는 곧 범죄자의 개개의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을 말한다.

신학에서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접 짓는 죄를 자범죄(自犯罪) 또는 자죄(actual crime)라고 한다.<sup>47)</sup> 이 때의 자범죄가 형법상 책임주의에 상응하나 자범죄에는 말과 행위로 표출되는 외면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개개인의 죄악된 생각 등 내면적인 범죄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행위책임인 형법상 책임주의와 차이가 있다. 형법은 이처럼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개인·자기)책임주의(Schuldprinzip)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 4) 현대적 범죄의 양상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규인 형법은 각칙(형법전 제2편)에서 총 42장 286개조에 걸쳐 개별적인 범죄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상 범죄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47) 조영업, 앞의 책, 452면.



나누어진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갈수록 다원복잡화 되어가므로 기본형사 법규만으로는 새로운 범죄양상이나 흉포한 범행수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폭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가법) 등 형사특별법이 점점 양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률들에 위반하는 특별형법범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의 형태에 있어서도 살인·상해·강간·절도·강도 등 종래의 전형적인 범죄에 그치지 않고컴퓨터범죄·사이버범죄·조직범죄·마약범죄·경제범죄·환경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점차 그 수(數)를 더하여가고 있다.

## 2. 성경적 범죄관과의 비교

세상의 죄를 규정짓는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면 또한 도덕은 '하나님 말씀의 최소한'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의 범죄가 규범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경에서의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罪)란 결국 창조주이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내리신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형법상 범죄는 이러한 공의로운 말씀의 골격을 담은 구성원들의 합의, 즉 입법된 실정법규에 위반한 것이다.

형법상 범죄는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행위의 결합형태로서 그 유형이 반드시 법문에 규정되어야 한다. 즉 주관적 의사가 외부적 행위를 통해 표출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수사관이나 재판관도 사람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인간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인간의 의사만을 가지고 범죄로 삼아 이를 처벌한다면 법적 안정성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 틈새에 전단적인 독재

권력이 싹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윌리엄슨(Williamson)은 『소요리문답강해』에서 죄란 “하나님이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든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말한다.<sup>48)</sup> 그의 표현에 따르면 전자는 성경적 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범죄는 후자에 가깝다고 하겠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규정은 형법상 불법(不法)이 국가의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특수한 행위형태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 즉 특정한 개별 행위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성경적 죄와 형법상 범죄의 공통점은 죄(罪)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후자는 세상의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실정법의 기초는 조리(條理) 내지 인간의 보편적인 규범원리에 있고 그 원리들은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적 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명령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명령이 인간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비록 왕이나 주권자라 할지라도 ‘주권자의 명령이 곧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실증주의의 일종인 ‘법명령설(法命令說)’의 입장이며 그 극단적 폐해는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저질러진 나치의 죄악상을 연상시킨다.

바울이 말하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2:21)는 말에서의 율법이란 사울의 율법

www.kci.go.kr

48) Williamson, 최덕성 역, 앞의 책, 60면.

또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일 것이다. 교조적 규정은 곧 개념법학의 산물로서 세상의 법 가운데서도 법실증주의적 폐단을 초래한다. 실정법을 통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은 국가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법문을 뛰어넘어 전단적(專斷的) 형벌권을 행사하거나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죄형법정주의도 형식적 조문에만 치중하게 되면 소위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을 자초하게 된다. 나치형법 제2조의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 규정의 내용까지도 헌법적 가치체계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되는 적절한 내용이 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가 등장한다. 현재 우리 헌법과 형법이 지향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 3. 형벌사상과 형법적 형벌관

벌(罰) 또는 형벌이란 무엇인가? 형법학에서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수단의 일종이다.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 가지가 있다(제41조). 이러한 형벌은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으로 대별된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는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로 귀결되고 이는 곧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중범죄인이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형사법규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형벌을 과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형법에서의 형벌과 관련하여 인류역사상 형벌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모하여 왔느냐에 관한 소위 형벌의 역사, 즉 형벌사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미 살펴본 성경에서의 형벌관과의 비교 고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1) 복수와 응보

인간사회에 있어 형벌사상의 기원은 우선 복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시 내지 초기 고대사회에서는 복수가 공공연히 행해졌다. 피해자가 입은 해악과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피해당사자와 그 친족 나아가 혈족이 가해자 측에 가하는 복수는 동 시대로서는 소박한 정의 관념의 표현이었고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복수는 오늘 날 국가공권력에 의한 공(公)형벌과는 거리가 먼 사적인 제재, 즉 사형(私刑)에 불과하였다. 지나친 복수는 오히려 종족간의 투쟁을 유발하고 자칫하면 공멸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서 국가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복수는 응보의 형태로 제한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탈리오(Talio)의 법칙[Lex Talions]이라고 불려지는 이 응보(應報)는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eye for eye, tooth for tooth)”로 표현되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 사상으로서 오늘날 형벌사상의 기원이 되고 있다.

형법학에 있어서도 형벌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형벌이론이 응보형주의와 후술하는 목적형주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을 정의의 요구에 따른 응보적 해악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처벌된다(punitur, quia peccatum est)”는 공식이 적용된다. 범죄가 법익에 대한 해악이므로 형벌 또한 이에 상응하는 해악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형벌에 응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형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절대주의라고도 한다.

응보형론자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는 칸트이다.

칸트(Kant)는 “범죄란 자유의사를 가진 자의 도덕법칙 위반이며 이에 대한 형벌은 범인 또는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범인이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과하는 동해적(同害的)인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응보”라고 하였다.<sup>49)</sup> 칸트에 의하면, “국가는 인격자인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하여 성립한 사회이므로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실천이성의 지상명령’(Kategorischer Imperative der Praktischen Vernunft)에 위반한 자로서 국민이 될 능력을 상실한 자이므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형벌의 종류와 분량도 그 범행에 비례하여야 하며 심지어 지구에 종말이 도래하여 국가를 해체해야 하는 최후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사형수는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만 정의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의 실현을 통해 이 세상은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sup>50)</sup> 동해적 응보형을 강조하며 정의실현을 주장한 점에서 그의 견해를 정의설(正義說)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 그 자체에 있고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절대적 응보주의의 입장에 서있었다.

비르크마이어(Birkmeyer)도 형벌은 발생사적으로 복수에 유래하는 것이며 그것이 순화된 형벌이므로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정의의 응보라고 하였다.<sup>51)</sup>

이러한 절대적 응보관은 헤겔에 이르면 다소 완화되고 있다. 헤겔은 그의 『법철학강요』에서 형벌의 본질은 변증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정

49) Kant, *Samtliche Werke*, Rosen Kranz ed, 1838, Vol. 8, S.274ff.(진계호, “형벌의 본질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7호, 한국법학회, 2001, 21면에서 재인용).

50) 진계호, 앞의 논문, 21면 주)21 참조.

51) Birkmeyer, *Schuld und Gef hrlichkeit*, 1919, S.32(진계호, 앞의 논문, 22면에서 재인용).

(正)에 대한 부정(否定)인 범죄[반(反)]에 대해 다시 법의 이념을 회복하여 합(合)에 이르게 하는 국가에 의한 ‘부정의 부정’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보하는 동해(同害)적일 필요는 없고 ‘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제재수단’이면 족하다는 소위 가치적 응보형론(價值的 應報刑論)을 주장하여 후술하는 예방사상과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sup>52)</sup>

## 2) 형벌에서의 예방사상

형벌에서의 예방사상은 목적형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목적형주의는 형벌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므로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형벌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형벌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점에서 상대주의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목적형주의는 다시 형벌의 목적을 보는 시각에 따라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대별된다.

### (1) 일반예방주의

일반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잠재적 범죄인이라 할 수 있는 일반사회인을 위하·경계하여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함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곧 한 사람의 범죄인을 벌함으로써 백명의 일반인을 경고하여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포이에르바흐(Feuerbach)의 심리강제설이 이 입장을 대표하는데, 이 이론은 죄를 통해 얻는 쾌락보다 형벌로써 주어지는 불쾌가 크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합리적, 타산적 존재인 인간은 자연히 심리적으로

52)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3.Aufl., §95(진계호, 앞의 논문, 20면에서 재인용).

범죄를 억제하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2) 특별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에 대한 위하(Abschreckung)와 개선(Besserung) 또는 격리(Unschädlichmachung)에 의하여 범죄인 자신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함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목적형론자이면서 특별예방주의를 강조한 독일의 리스트(Liszt)는 범죄인을 분류하고 이에 개별화된 형벌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형벌은 전통적인 응보형처럼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반작용이 아니라 사회방위를 위한 필요성과 합목적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한다.<sup>53)</sup> 그리하여 리스트는 개선이 불필요한 기회범에게는 위하(威嚇)적 성격의 형을 가하면 되고,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상태범에게는 개선형 내지 교육형을 과하여야 할 것이지만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범에 대하여는 격리를 통하여 사회에서 제거하는 무해화(無害化)처분을 하는 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 3) 신고전주의 형벌관 - 응보와 예방의 조화

오늘날 형법학에서 형벌의 본질을 바라보는 주류적인 견해는 형벌의 본질이 기본적으로는 응보에 있지만 예방이라는 목적도 고려하여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위 결합설(Vereinigungstheorie)의 입장이다. 이는 형벌의 응보성을 강조하던 고전적 사고방식에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성도 가미하는 신(新)고전주의적(neoklassischer) 형벌관이다. 응보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과 결합하여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 각자의 기능

53) 이재상, 형법총론(제5보정판), (박영사, 2007), 54면 참조.

을 담당할 때 형벌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범죄와 형벌을 형사법규에 규정하여 수범자들로 하여금 그 존재를 인지시키는 것은 우선 일반국민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위하·경계하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지은 죄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을 과하는 것은 일단 응보의 관점이다. 나아가 행형(行刑)단계에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은 특별예방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별예방은 수형자에 대한 적정한 교정(矯正)을 통하여 그 효과를 배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베카리아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고 한다.<sup>54)</sup> 확실한 형벌은 비록 그 형벌이 온건하더라도 오히려 잔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감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형벌의 본질에 죄에 대한 응보가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벌은 오로지 처벌만을 위한 응보에 그친다면 그 공동체는 과거지향적일 뿐 미래가 없다. 응보가 예방과 결부되고 수형자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회복될 때 그 사회는 살아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 형벌의 현재와 미래 - 교육형과 교정(矯正)

종래의 형벌이 응보성을 그 본질로 하면서도 일반예방과 특히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별예방주의를 강조한 독일의 리스트의 영향을 받아 리프만(Liepmann) 등은 교육형론을 주장하였다. 리프만에 의하면 형벌은 범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형이야말로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형벌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고

54) Beccaria, 한인섭 역, 앞의 책, 106면.



한다.<sup>55)</sup> 교정(矯正)이란 이러한 교육형사상에서 발전한 것이다. 교정은 말 그대로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 또는 결점 등을 바로 잡아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56)</sup>

교정학에서는 교정을 정의하기를, ‘반사회적이거나 반규범적인 행위를 한 비행소년이나 범죄자의 일탈된 성격이나 행동 등을 바로 잡아 재사회화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한다.<sup>57)</sup> 형벌이 종래처럼 수형자에게 획일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재사회화를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하겠다. 오히려 교도소(矯導所)가 명칭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종래 범죄자의 악성을 감염시키는 소위 ‘범죄학교’라는 오명을 갖기도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향후에는 형벌의 주된 목적을 교정에 두고 범죄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그 개인의 성향을 심사하여 사회내처우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교정처우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 IV. 나오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의 죄는 단순히 이분적(二分的)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양자 간에 일정한 분별을 갖고 서로의 범주와 기능을 확인하면서 범죄의 인식 내지 개념의 수용차원에서부터 상호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후자는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더라도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화되고 구체화되면 우선 ‘범죄 없는 지상천국’이라는 목적에 상당한

55) 이재상, 앞의 책, 55면 참조.

56)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82면.

57) 오영근 외 7인 공저,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2007, 3면 참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후자는 전자에 그 태생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정당성과 나아가 실효성을 근거할 수 있으며 후자에게 미래지향적인 지침이 되고 또한 내적인 준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굳이 양자의 범주를 설정한다면 성서적 죄는 세속적 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속적 죄는 성경적 범죄의 범주에 종적이면서도 내재적인 관계에 있으며 다만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의 사회질서 유지에 합당하게 그야말로 인간답게 합리적으로 제한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질서를 열망하는 기독교인들이 창조질서의 일부인 세속적 질서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것은 또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니면서도 이 땅에 인자(人子)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빛’(요8:12, 9:5)이 되신 예수님은 이미 양자가 구별되지도 않고 구별될 수도 없는 것임을 보여주셨다.<sup>58)</sup> 물론 세속적 규범이 하늘의 섭리에 배치되는, 즉 정의롭지 못하고 적절한 내용을 갖지 못하는 악법일 때에는 잘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원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악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개선방법과 절차에 있어 일시적인 과격한 행동은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평상적 이익에 막대한 침해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행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많은 법제도적 구조가 총체적인 부정 속에서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때때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혁명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역사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58) 마태복음 18:18-19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참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이 세상의 법과 사회제도 또한 역사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통치권)를 주셨다.<sup>59)</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간 자신의 제도에 의해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제도가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기초지을 때 그 제도의 정당성과 수범성(受範性)이 담보되어 구성원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제도와 시스템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부합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겸허하고 지혜로우며 말씀에 충실할 때 범죄적 양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죄와 벌’을 규정지어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구현하는 기독교의 율법은 세상의 범죄와 형벌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거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의 표상을 뛰어넘는 용서와 화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낮은 곳을 살피고 밑바닥을 올리며 감싸 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과 세상제도는 결코 생명과 사망으로, 신성(神聖)과 세속으로, 하늘과 땅으로 양분될 성질만이 아니라 일반과 특수, 전체와 부분이라는 명제로 통합적 사고를 지향해야 하고 지상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되도록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실체적 내용을 담아가며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형벌은 응보(應報)와 교정(矯正)이 되어야 한다. 응보에는 하나님의

59) 고용수, <기독교학교의 인간교육>, 『기독교학교교육』 제2집, 기독교학교협의회, 43면은 이를 위임통치의 기능이라고 한다.

공의가 작용하고 교정은 예수님의 사랑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약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라면 신약은 주님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된다. 응보적 형벌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하는 관점이라면 교정은 특별예방의 차원에서 이미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재사회화(再社會化) 되도록 그 본질적 악성(惡性)을 교화하고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다. 범죄가 개별적 행위로 발생되었더라도 그 범죄원인에 사회적 요인이 제공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비록 살인·절도 등 개인적 범익을 침해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형벌은 개별적 책임주의를 그 근거로 하여 지은 죄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을 과할 것을 요구하지만 범죄자를 방관 내지 배출한 사회적 책임은 범죄자에 대한 교정 노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7)고 하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범죄자도 우리의 이웃이므로 교정(矯正)제도는 바로 수형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용수. <기독교학교의 인간교육>. 『기독교학교교육』 제2집, 기독교학교협의회.
- 김성봉. <죄에 대한 인식의 변천에서 볼 수 있는 현대 기독교 윤리의 위기>. 『한국 개혁신학』, 서울: 한국개혁신학회, 1998.
- 세계복음화평화교회 저. 『성서의 근본원리』. 서울: 민성사, 1980.
- 송재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2004.
- 오영근 외 7인 공저. 『한국교정학』. 서울: 한국교정학회, 2007.
- 이명직. <내 속에 거하는 죄>, 『활천』. 1994.10.
- 이인영. <십계명 제9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유관순연구』7호. 2006. 6.
- 이재상. 『형법총론』(제5보정판). 서울: 박영사, 2007.
- 이종성. 『주기도문 · 십계명 · 사도신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진계호. <형벌의 본질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7호. 서울: 한국법학회, 2001.
- 하용조 편.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1.
- Moody, 권달천 옮김. 『무디의 십계명 해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 Wasserzug, 박용삼 옮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8.
- Beccaria, 한인섭 옮김. 『범죄와 형벌』. 서울: 박영사. 2006.
- Williamson, 최덕성 옮김. 『소요리문답강해』.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 Calvin, 원광연 옮김. 『기독교강요(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논문투고일: 2007.10.31

심사개시일: 2007.11.06

심사완료일: 2007.11.10